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의 예외 사유(벌금 미만 형 확정, 선고유예 등) 삭제〉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98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12. 2.
3. 회부연월일 : 2024.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결격 기간을 부여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결격 기간을 면제하고 있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처분은 명백히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그 처벌만 면하는 조치임에도, 최근 행정조치의 면제 또한 당연하게 요구하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임.

더욱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법적 처벌과 행정조치를 모두 받지 않으며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저해를 초래함.

이에, 제도의 시효가 다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의 예외 사유인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임(개정안 제82조제2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u>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단서 삭제></u> 1. ~ 10. (현행과 같음)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
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
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라.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
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
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
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
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
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
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
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
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10.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
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
(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본문과 각 호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공동위험 행위,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서 위반한 날부터 1~5년 등의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는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 ①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¹⁾, ② 선고유예²⁾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③ 기소유예³⁾나 ④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⁴⁾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위반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벌금 미만의 형은 구류, 과료, 몰수를 의미함.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1. 사형 | 2. 징역 | 3. 금고 | 4. 자격상실 | 5. 자격정지 |
| 6. 벌금 | 7. 구류 | 8. 과료 | 9. 몰수 | |

2)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8609>)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뇌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기소유예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임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 | |
|-----------------------|---------------|
|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
|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4. 범행 후의 정황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감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등이 있음.

개정안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 사유가 도로교통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운전면허 결격 기간의 예외를 없애고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을 통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 기간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공동위험 행위,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통해 제8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는 경우 재판 또는公所 제기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43조 등을 위반하였으나 예외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된 사안(벌금 미만의 형⁵⁾ 등)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적용하게 되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벌금 미만의 형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보임.

또한, 다른 법률의 결격사유 규정은 법률 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의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고 있는 반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각 호는 「도로교통법」

5)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 중에 담배꽂초를 버린 행위도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쓰레기 등 투기) 위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에는 포함될 수 있어 보이는데, 이 같은 법적용은 과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위반 그 자체를 결격사유의 기준 시점으로 정하는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규정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6).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전면허 결격기간 말소(면제) 건수는 총 40,055건인데, 사유별로는 기타 사유(사면 등)가 30,652건(76.5%), 벌금 미만의 형이 9,174건(22.9%), 기소유예 188건(0.4%), 보호처분 34건(0.08%), 선고유예 7건(0.01%)으로 조사됨.

운전면허 결격기간 말소(면제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계
계	13,674	12,259	7,261	6,861	40,055
벌금 미만의 형	3,122	2,324	2,059	1,669	9,174
기소유예	55	58	44	31	188
선고유예	2	1	2	2	7
보호처분	9	14	8	3	34
기타(사면 등)	10,486	9,862	5,148	5,156	30,652

※자료: 경찰청(경찰청에 따르면, 실무상 대부분 결격 말소 사유를 기타로 입력하고 있어, 실제와 통계 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참고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중 무면허운전 규정의 주요 입법 연혁은 아래 표와 같음.

도로교통법	조항
도로교통법(법률 제3489호, 1982년 1월 1일 시행)	제57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7.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8조(무면허운전의 금지)]
도로교통법(법률 제3912호, 1987년 7월 1일 시행)	제70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7. 제40조의 규정을 위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40조(무면허운전의 금지)]
도로교통법(법률 제4872호, 1995년 1월 5일 시행)	제70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한다. 1. 제40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면허 취소는 약 36만건, 운전면허 정지는 약 7만건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운전면허 취소(건)	90,174	84,285	93,069	90,410	357,938
운전면허 정지(건)	15,980	14,721	19,170	20,559	70,430

※ 자료: 경찰청

참고로, 경찰청은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라도 당해 행위로 벌금 미만의 형 등을 받은 경우에는 남은 결격 기간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①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판·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점, ② 선고유예, 기소유예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 또는 처벌만 면제해주는 조치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여전히 위험 운전자를 교통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면제함으로써 결격 제도가 형해화된다는 우려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